

# 어촌신활력증진사업(유형2)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3월 23일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3월 23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29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•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(2026. 4. 3.) 상정·질의답변·토론·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오정홍 어촌활력과장)

가. 제안이유

-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(유형2)는 어촌 주민 수요에 맞춰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주요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, 도시재생 중간 지원 조직 위탁경력이 풍부한 앵커조직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으며,
-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전문인력들이 현장에 상주하며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등 앵커조직은 민·관 사업협의체의 중심이 되어 지속가능한 어촌사회 구성에 핵심적인 역할 수행할 것으로 기대.
- 특히, 사업을 주체적으로 추진할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앵커조직을 사전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여 여타 조직보다 사업수행 능력에 있어 우수할 것으로 판단.

나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- 어촌신활력증진사업(유형2) 석병리항 앵커조직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전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앵커조직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

다. 제안근거

-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- 「어촌어항법」 제47조의6 제1항 제5호(어촌·어항재생사업의 시행)

## 라. 주요내용

- 위탁대상: 어촌신활력증진사업(유형2) 석병리항 앵커조직 운영
- 위탁사무: 앵커조직 운영에 관한 전반
  - 링커조직 발굴 및 연계, 관리·감독
  - 지역자원조사를 통한 어촌생활권 설정
  - 주민소통 및 수요파악을 통한 사업 추진과정 환류
  - 사회혁신프로그램 기획 및 어촌스테이션 조성·운영
  - 백서발간 및 홍보 등 사업 전 과정 총괄·관리 등
- 위탁기간: 2026 ~ 2028년 / 3년
- 수탁기관: 주식회사 문화공동체 다움
- 수탁자 선정방식: 해양수산부 공모가이드라인 및 시행지침(이하 ‘지침’)에 따른 앵커조직 공모를 통해 수탁자 선정
-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: 1,000백만원
  - 지침: 사업기간 총 4년, 앵커조직 운영비 10억원(인건비는 운영비의 60% 이하)  
\*위탁기간은 잔여 사업기간이며, 운영비는 해수부 별도 심의 신청 예정
- 추진상황
  - (24.11.) 공모사업 앵커조직 선정 및 협약 체결
  - (24.12.) 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(유형2) 공모 신청
  - (25.02.) 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(유형2) 공모 선정
  - (25.05.)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  - (25.06.)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
  - (25.07.~10.) 앵커조직 공모 신청 시 인력 변경(퇴사)에 따른 보완
  - (25.11.) 석병리항 앵커조직 수행포기서 제출에 따른 해수부 변경 승인
  - (25.12.) 앵커조직 재공모 및 협약
  - (26.03.)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
-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적정성 검토 결과
  - 심사내용 : 민간위탁 대상기관 적정여부 및 운영평가
  - 심사결과 : 신규위탁(수의계약) 적정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장준호)

- 본 동의안은 해양수산부 주관 공모사업인 어촌신활력증진사업(유형2) 석병리항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앵커조직의 운영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,
- 검토결과, 본 동의안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(유형2) 석병리항의 원활한 추진과 전문적 운영을 위하여 앵커조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, 공모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앵커조직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하여 기획·운영을 주도하는 구조인 점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은 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민간위탁은 불가피하고 필요성 또한 인정됨.
- 다만, 앵커조직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한 이후 수의계약 방식의 위탁을 전제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의회 동의를 제출한 것은 「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서 정한 의회의 사전 통제 기능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,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### 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